

금융투자소득세(2023.1.1 이후)

1. “금융투자소득”이란?

-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을 말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

2.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투자소득을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1)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외주식)</p> <p>②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채, 국공채, CD 등)</p> <p>③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p>	<p>① 적격 집합투자기구(펀드)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p> <p>②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매매,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p>
<p>(3)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p>	<p>①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사채(ELB, DLB)의 이익은 이자소득임)</p> <p>②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p>

3. 투자계약증권이 무엇인가요?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무엇인가요?

<p>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란?</p>	<p>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로서, 펀드라고도 합니다.</p> <p>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p>
<p>집합투자기구의 종류</p>	<p>① 투자신탁 ② 투자회사 ③ 투자유한회사 ④ 투자합자회사 ⑤ 투자유한책임회사 ⑥ 투자합자조합 ⑦ 투자익명조합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p>
<p>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p>	<p>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하며, 일반적인 정의는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배분 받은 것을 말합니다.</p>

5. 파생결합증권이 무엇인가요?

<p>의의</p>	<p>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ELS, DLS, ELW, ETN 등)</p>
<p>과세대상</p>	<p>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ELS, DLS의 이익은 2022년말까지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ELS, DLS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p>

6. 파생상품이 무엇인가요?

<p>의의</p>	<p>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 선물, 선도, 옵션, 스왑)</p>
<p>과세방법</p>	<p>2022년말까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p>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1. 금융투자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0.12.2. 국회를 통과하여,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손익 통산가능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 통산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가능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1) 금융투자상품의 과세대상이 확대 및 재분류가 됩니다.

① 비과세소득 → 금융투자소득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았던 종전과 달리,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②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종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ELS, DLS, ETN 등)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되어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종전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됐던 상장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행 개정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비교 요약표¹⁾>



¹⁾ 기획재정부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03면

(2)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세액 계산 및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류과세)

분류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겼습니다.

2022년말까지 원천징수의무	종전에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
2023년부터 원천징수의무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겼습니다.